

해외자매대학교환학생규정

제정 2013. 9. 21

최종개정 2020. 1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예술대학교(이하 “본대학교”라 한다)의 재학생들에게 글로벌 교육 및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자매대학교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교환학생 초청 및 파견 등 관련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

제2조(구분 및 자격) ① 교환학생은 파견 교환학생과 초청 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8.9.1.>

②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8.9.1., 2020.12.28.>

1. 1학년 2학기 이상 이수한 전문학사과정 재학생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재학생
2. 총 평점 평균이 3.00점 이상인 자
3. 해당 해외자매대학의 어학기준에 명시된 공인어학성적시험 점수 보유자
4. 본대학교 장기 글로벌 현장실습 프로그램 기참여자는 제외
5. 마지막 학기 학생인 경우 졸업작품 제작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허가를 득한 자

③ 초청 교환학생 지원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18.9.1.>

1. 해당 지원자의 소속대학 교환학생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2. 한국어학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회화능력을 갖춘 자

제3조(기간) 교환학생 기간은 한 학기로 한다.

제4조(비용) ① 파견 교환학생 및 초청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등록금 납부는 해당 해외자매대학교와 본대학교의 협정에 근거하여, 파견 학기별로 별도 적용한다. <개정 2018.9.1.>

② 제반 수속비용 및 기숙사비, 생활비 등은 학생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가계곤란자 및 우수학생에 대해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1.>

제5조(신청절차)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절차에 의해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 2020.12.28.>

1.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서식1>
2. 지도교수 추천서 <서식2>
3. 성적증명서
4. 공인어학성적표
5. 학업계획서(국문 및 해당 외국어) <서식3, 4>
6. 파견대학 수강예정과목 계획서 <서식 5>

제6조(선발) ① 파견 교환학생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본대학교 국제교류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8.9.1.>

② 서류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을 거친다. <개정 2018.9.1.>

③ 심사 기준은 담당 행정부서와 국제교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면접 심사를 통과한 경우 결과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최종 승인한다. <개정 2020.12.28.>

제7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라도 파견 전후에 해당학기 수업이 진행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

②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대상자는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

③ 초청 교환학생은 학기당 12학점 이상 18학점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 <개정 2020.12.28.>

제8조(학점인정 및 평가) ① 해외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대학교에서 모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칙 제26조에 의거하여 최대 인정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9.1., 2020.12.28.>

1. 전문학사과정 : 최대 18학점

2. 전공심화 학사학위과정 : 최대 15학점

② 전 항의 성적은 졸업 총 취득학점에는 포함하되, 총 평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양 및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과목은 소속 전공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서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처리하고,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28.>

⑤ 파견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수 후 <서식6>의 학점인정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학점인정여부는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 2014.4.14., 2018.9.1.>

⑥ 해외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본대학교 성적으로 환산 시 P(Pass) 또는 F(Fail)로 기록한다. <신설 2018.9.1.>

⑦ 초청 교환학생의 취득 학점은 본교의 학칙 및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수학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 국제교류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18.9.1.>

제9조(졸업) 파견 교환학생 참가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9.1.>

제10조(의무) 참가학생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교환학생 파견기간 동안 본대학교를 대표해서 성실히 학업에 임한다.

②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제교류원 및 소속 학부(전공)에 보고한다. <개정 2018.9.1., 2020.12.28.>

③ 교환학생 파견기간 중 체류국가의 각종 법규와 파견대학 학칙 등을 준수하여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제11조(수학허가) 국제교류원장은 초청 교환학생 지원자에 대하여 교무처장과 함께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해당 학생의 수학 여부를 결정한 후 정규학기 과정 2개월 전까지 해당 지원자의 소속대학 국제교류관련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

제12조(수학허가 취소) 수학허가를 받은 초청 교환학생이 수학기간 중 국내 법규와 본대학교의 학칙을 위반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1. 학생

성 명	(한글)	(영문)		사 진
학부 (전공)		학 번		
학년/학기		주민번호		
핸드폰				
이메일				
주소				
평점 *포기전성적기준		어학성적		
신청대학 및 전공				
지원목적 (학업계획요약)	1. 2. 3.			

2. 보호자

성 명		지원자와의 관계	
집전화		핸드폰	
주소			

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파견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으로의 파견을 희망하며, 보호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 및 경비 부담에 동의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보 호 자 :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추천서

1.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부(전공)	
학 번		학년/학기	

2. 추천 내용

년 월 일

추천인 지도교수 : (인)

학부장 : (인)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 학업계획서 (국문)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 학업계획서 (해당 외국어)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5>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수강예정과목 계획서

연번	해당 대학 과목명	수강희망 이유 (간략기술)	본교 유사 과목명
1			
2			
3			
4			
5			
6			
7			

※ 첨부 : 해당 대학 과목에 대한 설명
(해당 대학 웹사이트를 참조하여 원문 및 한국어로 번역하여 작성)

년 월 일

신청자 : (인)

추천인 지도교수 : (인)

학부장 : (인)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교환학생 학점인정신청서					
		결	담당	총괄	처장
		재			
학 부		학 년		학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 소					
전화번호	본 인	(자택)	(H.P)		
	보호자	(자택)	(H.P)		
과 정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국 가 명					
학 교 명		대학과의 관계	자매대학		
학교주소		학교 홈페이지			
기 간					
<p>본인은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p>					
확 인	지도교수	학 부 장			
		신청자: (인)			
붙 임 서 류	교환학생	1. 수학한 대학의 해당학기 성적증명서 (원본/국문 번역본) 2.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